



협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0.22

방송콘텐츠 제작의 대표적인 재원은 방송광고와 협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협찬의 허용 여부를 비롯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협찬행위를 적절히 통제할 방법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연계편성과 같은 불공정한 음성적 협찬을 금지하는 동시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찬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방송광고성 재원 시장의 경직적인 운영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협찬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2호)

-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협찬고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수정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안 제74조)

- 협찬이 금지되는 협찬주 및 방송프로그램 장르를 명시하고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립
- 구체적으로 i)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협찬과 ii)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장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
- iii) 협찬주의 상품 및 용역 구매를 권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한 대가 수령, 시청자·방청객에 제공될 상품·경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안 제75조)

-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찬주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기능·효능·효과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협찬 고지를 필수로 규정

※ 건강, 안전,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으며,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 · 제출의무 마련(안 제75조의2)

- 협찬에 대한 관리 ·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또한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

법무법인(유) 세종은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 · 통신 · 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 ·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송법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강신욱

대표변호사

02-316-4059

sokang@shinkim.com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02-316-4480

jkwlee@shinkim.com

이지은

선임연구위원

02-316-1720

jeunlee@shinkim.com